

충청북도향결핵체보급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2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1993. 3. 6

발의자 : 조례정비특별위원장

제안이유

'91. 10. 10일 의료보호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조문변경

주요골자

징수대상 적용규정 변경

(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8조 → 동법 동시행규칙 제5조)

첨부

1. 충청북도 향결핵체보급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1부
2. 신구조문대비표 1부

충청북도항결핵체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항결핵체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“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8조”을 “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5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